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 보

제1467호 2023년 5월 17일(수)

입법예고

-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

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,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5월 17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

2. 개정이유

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및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고, 해수욕장 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물가 상승과 타지역 사례를 비교·검토하여 우리시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여 효율적인 해수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

1) 「해수욕장법」 제19조 개정

- 위탁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조항 변경 (안 제4조)

2) 「해수욕장법 시행령」 제8조 개정 및 「해수욕장법 시행규칙」 제9조 삭제

- 해수욕장의 관리·위탁할 수 있는 시설 일부 변경(안 제4조, 안 제6조)

3) 「어촌·어항법」 제57조 개정

- ‘한국어촌어항협회’를 ‘한국어촌어항공단’으로 변경(안 제5조)

나. 시설 사용료를 일부 인상(별표1)

4. 자치법규안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.

6. 6.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: 관
광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

- 주 소: (우) 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, 속초시청 관광과
- 연 락 처: 033-639-2544(FAX 033-639-2384)
- 전자메일: tt7895@korea.kr

다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

6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관광과 관광인프라개발팀(033-639-254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9조제4항”을 “법 제19조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제8조 및 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9조”를 “제8조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“영 제8조 및 규칙 제9조”를 각각 “영 제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5호 중 “한국어촌어항협회”를 “한국어촌어항공단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제2호 중 “영 제8조 및 규칙 제9조”를 “영 제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해수욕장 위탁관리·운영의 내용)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"위탁관리·운영의 내용 및 범위"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제4조(해수욕장 위탁관리·운영의 내용) 법 제19조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8조 및 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·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	1.----- ----- ----- 제8조 제1항 ----- ----- ----- -----
2. 영 제8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해 시가 정한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	2. 영 제8조 제1항 ----- ----- -----
3. 그 밖에 시장이 영 제8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3. ----- 영 제8조 제1항 ----- ----- -----
제5조(해수욕장 위탁관리자의 범위)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8	제5조(해수욕장 위탁관리자의 범위) -----

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위
탁관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이나 단체를 말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「어촌·어항법」 제57조에 따
른 한국어촌어항협회

6.·7. (생략)

제6조(해수욕장 위탁관리·운영
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) ①
~ ③ (생략)

④ 시장은 해수욕장 위탁관리·
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
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
탁관리·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
지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영 제8조 및 규칙 제9조에
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
르게 관리·운영하는 경우

3. (생략)

⑤ (생략)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

- 한국어촌어항공단

6.·7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해수욕장 위탁관리·운영
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) ①
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영 제8조제1항

3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

[별표 1] 해수욕장시설 사용료(제10조 관련)

[현행]

(단위 : 원)

시 설 명	구 분	기 준	사 용 료	
샤 워 장	어 른	1회	2,000	
	군인, 청소년	1회	1,500	
	어린이	1회	1,000	
	코인샤워	1회 1분30초	500	
물품보관소	보관용 물품	1일	2,000	
선 베 드		1개 / 1회	10,000	
파 라 솔	일반형	1개 / 1회	10,000	
	대형(가족용)	1개 / 1회	30,000	
튜 브	대형	1개 / 1회	10,000	
	소형		5,000	
구멍조끼	대형	1개 / 1회	10,000	
	소형		5,000	
국민여가 캠 핑 장	오토캠핑장	1개소/1일/1차량	성수기	비수기
			40,000	30,000
	샤워장 (코인온수샤워기)	1회 이용	성수기	비수기
			최초 1회 1,000원 3분 이용 ※ 추가 500원 1분 30초 이용	1회 500원 4분 이용

<비 고>

- 위 표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.
 - 가. 어른 : 만 19세 이상의 사람
 - 나. 군인 : 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한 사람으로 단기하사 이하의 사람
(전투경찰, 의무경찰, 경비교도, 공익 근무요원 포함)
 - 다. 청소년 :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
 - 라. 어린이 : 만 7세 이상 만 12세 미만인 사람
 - 마. 캠핑장의 성수기 : 여름 피서철(7.1~8.31), 단풍철(10.1~10.30)
 - 바. 캠핑장의 비수기 : 성수기 이외의 기간
 - 사. 캠핑장 샤워장의 성수기 : 해수욕장 개장기간
 - 아. 캠핑장 샤워장의 비수기 : 해수욕장 개장이외의 기간
- 오토캠핑장 이용차량이 캐라반인 경우 전기요금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.
- 속초해수욕장 주변에 조성된 임시주차장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한하여 유료로 운영하며, 사용료는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명시된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고 비수기에는 지역주민 전용 주차장으로 무료 사용토록 한다.
- 속초해수욕장 야간개장(18:00시 이후) 기간 중 구멍조끼 사용료는 50%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

[별표 1] 해수욕장시설 사용료(제10조 관련)

[개정안]

(단위 : 원)

시 설 명	구 분	기 준	사 용 료	
샤 위 장	실내(코인샤워)	1회 / 3분	1,000 ※ 추가 500원 / 1분 30초 이용	
	야외(코인샤워)	1회 / 1분30초	500	
물품보관소	보관용 물품	1일	대 3,000 중 2,000 소 1,000 ※ 당일 24시 경과 시 1일당 동일요금 부과	
썬 베 드		1개 / 1회	10,000	
파 라 솔	일반형	1개 / 1회	10,000	
	대형(가족용)	1개 / 1회	50,000	
튜 브	소형	1개 / 1회	5,000	
	대형		10,000	
구멍조끼	소형	1개 / 1회	5,000	
	대형		10,000	
국민여가 캠 핑 장	오토캠핑장	1개소/1일/1차량	성수기	비수기
			45,000	35,000
	샤워장 (코인온수샤워기)	1회 이용	성수기	비수기
			최초 1회 1,000원 3분 이용 ※ 추가 500원 1분 30초 이용	1회 500원 4분 이용

<비 고>

- 위 표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.
가. 캠핑장의 성수기 : 여름 피서철(7.1~8.31), 단풍철(10.1~10.30)
나. 캠핑장의 비수기 : 성수기 이외의 기간
다. 캠핑장 샤워장의 성수기 : 해수욕장 개장기간
라. 캠핑장 샤워장의 비수기 : 해수욕장 개장이외의 기간
- 오토캠핑장 이용차량이 캐라반인 경우 캠핑장의 전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전기요금(20,000원)을 별도로 징수한다.
- 속초해수욕장 주변에 조성된 임시주차장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한하여 유료로 운영하며, 사용료는 「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명시된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고 비수기에는 지역주민 전용 주차장으로 무료 사용토록 한다.
- ~~속초해수욕장 야간개장(18:00시 이후) 기간 중 구멍조끼 사용료는 50%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<삭제>~~